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2023년도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2024. 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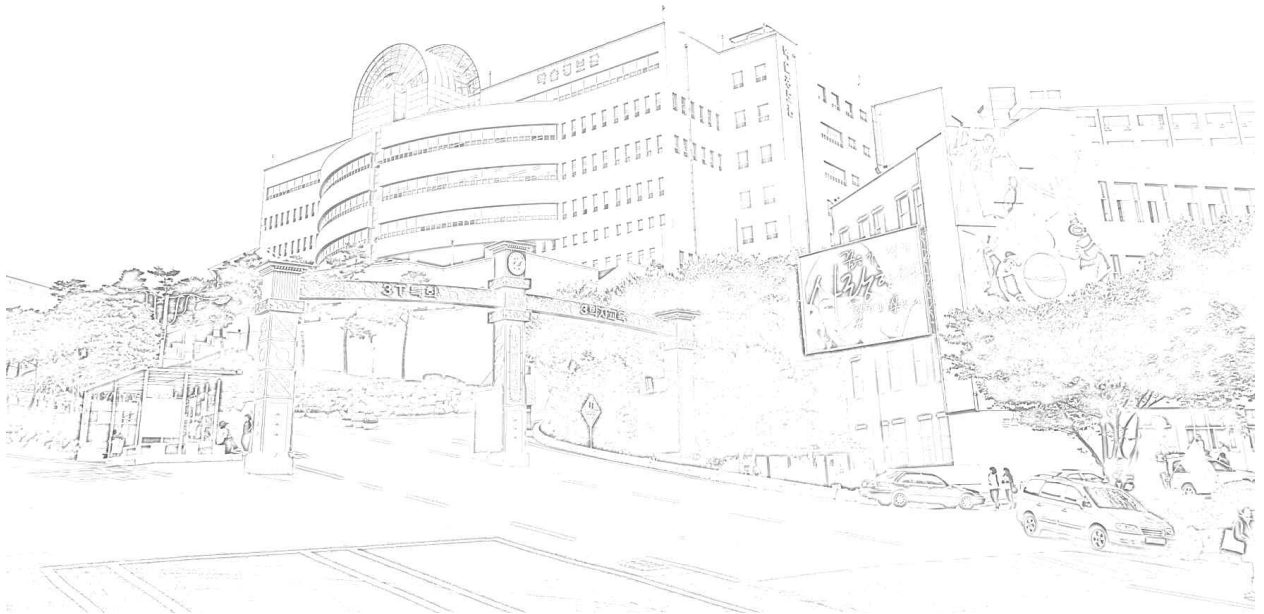
대구한의대학교

2023

대구한의대학교 일반대학원 자체평가보고서

본 보고서는 자체진단평가결과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인)

대학원위원회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보직
위원장	한방식품학과	교수	김수민	일반대학원장
위원	중독융합학과	교수	김진숙	중독융합학과장
위원	한의학과	부교수	이봉효	한의학과장
위원	복지관리학과	부교수	이채식	복지관리학과장
위원	동물보건학과	조교수	김주완	동물보건학과장
위원	치유과학과	교수	김상호	치유과학과장
위원	보건학과	부교수	강성욱	보건학과장
위원	한방산업학과	부교수	권애란	한방산업학과장
위원	산림비즈니스학과	부교수	임원현	산림비즈니스학과장

자체평가연구위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담당영역
위원장	한방식품학과	교수	양경미	
연구위원	대학원장	교수	김수민	1영역
연구위원	청소년학과	부교수	이채식	1영역
연구위원	복지관리학과	부교수	이채식	1영역
연구위원	평생교육융합학과	부교수	김한식	1영역
연구위원	한의학과	부교수	이봉효	1영역
연구위원	장애아동보육학과	교수	서혜전	2영역
연구위원	동양문화산업학과	조교수	백남대	2영역
연구위원	화장품약리학과	조교수	최은영	2영역
연구위원	제약공학과	교수	박문기	2영역
연구위원	화장품공학과	교수	정지욱	3영역
연구위원	한약개발학과	교수	김남우	3영역
연구위원	치유산업학과	부교수	권기찬	3영역
연구위원	특수교육학과	교수	박선희	3영역
연구위원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부교수	정지석	4영역
연구위원	보건학과	부교수	강성욱	4영역
연구위원	의과학과	부교수	박재효	4영역
연구위원	중독융합학과	교수	김진숙	5영역
연구위원	뷰티케어학과	부교수	민유홍	5영역
연구위원	치유과학과	교수	황세진	5영역
연구위원	푸드케어약선학과	교수	김미림	5영역
연구위원	대학원행정팀	팀장	성미향	1~5영역
연구위원	대학원행정팀	팀원	성길제	1~5영역

● 목 차 ●

I. 서론	6
1. 자체평가 목적 및 근거	6
1-1 평가목적	
1-2 추진근거	
1-2-1 관련 법령	
1-2-2 교내 관련 규정	
2. 자체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6
2-1 추진방법	
2-2 추진체계	
2-2-1 조직 구성	
2-2-2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구성	
2-3 추진방향	
3. 자체평가 대상 및 준거	8
3-1 평가대상	
3-2 평가내용	
3-2-1 평가내용	
3-2-2 평가준거	
4. 기대효과	9
II. 일반대학원 개황	10
1.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10
2. 연혁	11
3. 학제 및 학과 현황	15
4. 구성원 현황	17
4-1 업무조직도	
4-2 구성원	
4-3 업무분장	
III. 평가 결과	19

1. 발전계획 및 특성화	19
1-1 교육목적 및 목표	19
1-1-1 대학이념	
1-1-2 교육목적	
1-1-3 교육목표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20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평가	
1-3 자체평가	26
1-3-1 자체평가	
2. 교육	27
2-1 교육과정	27
2-1-1 교육과정 목표 및 편성	
2-2 교수	27
2-2-1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2-2-2 교수1인당 지도학생수	
2-3 학사관리	27
2-3-1 학사관리규정	
2-3-2 수업평가	
2-3-3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2-3-4 학 석사연계과정 제도	
2-4 교육성과	37
2-4-1 교육만족도	
3. 학생	39
3-1 신입생 충원율	39
3-1-1 신입생 충원율 현황	
3-2 재학생 충원율	40
3-2-1 재학생 충원율 현황	
3-3 취업률	41
3-3-1 취업률 현황	
3-4 학생복지	42
3-4-1 기숙사 수용	
3-4-2 의료원 진료감액	
3-5 대학원생 권리장전	43
3-5-1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및 시행	

4. 연구	47
4-1 대학원생 연구	47
4-1-1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4-2 연구윤리	48
4-2-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시행	
4-2-2 「산학협력단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시행	
4-2-3 연구윤리과목 개설 및 수강	
4-3 논문표절검정시스템	58
4-3-1 논문표절검정시스템 관리 및 적용	
4-4 장학금	59
4-4-1 교내외 장학금	
5. 시설·설비	59
5-1 대학원 시설 및 설비	59
5-1-1 대학원 학과별 시설	
IV. 종합 및 논의	66

- 표 목 차 -

<표 1-2-2-1> 리더의 양성 교육부문	22
<표 1-2-2-2> 연구기반조성 및 연구역량강화 부문	23
<표 1-2-2-3> 취업인프라의 구축 및 환류시스템 개시 부분	24
<표 1-2-2-4> 리더의 양성 교육부문	24
<표 1-2-2-5> 연구기반조성 및 연구역량강화 부문	25
<표 1-2-2-6> 취업인프라의 구축 및 환류시스템 개시 부분	25
<표 2-2-1-1>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28
<표 2-2-1-2> 타 대학원 대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현황 비교	28
<표 2-2-2-1> 교수1인당 지도학생수	28
<표 2-3-2-1> 일반대학원 수업평가 결과	29
<표 2-4-1-1> 교육만족도	37
<표 3-1-1-1> 연도별 신입생 충원을 현황	39
<표 3-1-1-2> 타 대학원 대비 연도별 신입생 충원을 현황 비교	40
<표 3-1-1-3> 입학정원 100~200명 대학원 신입생 충원을 현황 비교	40
<표 3-2-1-1> 재학생 충원을 현황	41
<표 3-2-1-2> 타 대학원 대비 재학생 충원을 현황 비교	41
<표 3-3-1-1> 취업률 현황	42
<표 3-4-1-1> 대학원 기숙사 수용 인원 및 수용율 현황	42
<표 3-4-2-1> 의료원 진료 감액 비율 제공 현황	43
<표 4-1-1-1> 연도별 장학금 지급율 현황	59
<표 5-1-1-1> 대학원 학과별 시설 현황	60

- 그림 목 차 -

<그림 1-2-1-1> 특성화 및 발전 추진 목표 체계도	21
<그림 4-3-1-1> 대구한의대학교 논문표절검사프로그램	58

I. 서론

1. 자체평가 목적 및 근거

1-1. 평가 목적

- 우리 대학원은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대학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대학원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대학원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음
- 자체평가의 목적
 - 대학원의 자체평가를 통한 내실화 점검
 - 대학원 평가를 대비한 지속적인 노력 점검
 - 평가준거별 유지여부 점검
 - 대학원 정보공시지표 향상을 통한 대내외적 인지도 향상

1-2. 추진근거

1-2-1.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제11조의2(평가)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1-2-2. 교내 관련 규정

- 「대구한의대학교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2. 자체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2-1. 추진방법

자체평가 사전준비 →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 자체평가 연구위원회 조직 구성 → 자체평가 추진 → 자체평가 결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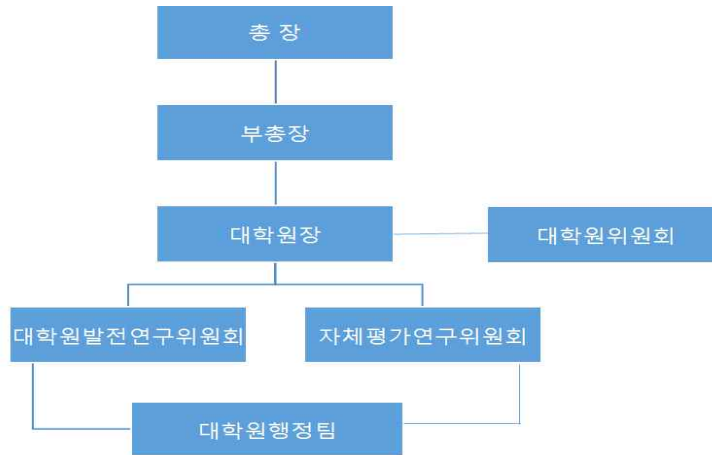
○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 자체평가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체제의 확립과 자체평가 추진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함
- 기본계획 수립시 자체평가의 기본방침 및 목적, 자체평가의 범위와 대상 설정, 자체평가의 추

진일정 계획 수립, 추진 소요예산 계획과 확보 등 제반 기본계획을 수립함

2-2. 추진체계

2-2-1. 조직 구성



2-2-2.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적인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함.
-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대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평가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대학평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겸비한 교원으로 임명함
-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기능
 -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 개발
 - 평가 방법 및 기준 개발
 -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 기타 자체평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 검토 및 결정

2-3. 추진방향

- 「2023 자체평가 기본계획」에 의거 자체평가 일정대로 진행하였음
- 수시로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자체평가 자료를 확인하였고 필요한 경우 구성원들에게 자체 평가목적에 대한 인식 및 평가준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자체평가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임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대학원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거침

년도	일자	추진내용
2023	'23.8.5	대학원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8.16	대학원 발전연구위원회 구성
	12.6	2023년 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12.29	자체평가연구위원회 1차 회의
	'24.01.05	학과별 자체평가 진단, 자료보완
	01.12	자체평가연구위원회 2차 회의
	01.16	학과별 자체평가 진단, 자료보완
	01.19	행정부서 최종 자체평가 진단, 자료보완
	01.24	대학원위원회 보고
	01.25	자체평가보고서 총장 보고

3. 자체평가 대상 및 준거

3-1. 평가 대상

- 대학원 사명 및 발전계획
- 교육
- 학생
- 연구

3-2. 평가 내용

3-2-1. 평가 내용

- 2023년 대학원 자체평가는 ①발전계획 및 특성화 ②교육, ③학생 ④연구 ⑤시설·설비로 총 5개 영역 18부분 28항목 부분의 평가준거로 구성함

3-2-2. 평가 준거

평가영역	평가 부분	평가항목	비고
1. 발전계획 및 특성화	1-1 교육목표	1-1-1 대학이념 1-1-2 교육목적 1-1-3 교육목표	정성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평가	정성
	1-3 자체평가	1-3-1 자체평가	정성
2. 교육	2-1 교육과정	2-1-1 교육과정 목표 및 편성	정성
	2-2 교수	2-2-1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2-2-2 교수1인당 지도학생 수	정량
	2-3 학사관리	2-3-1 학사관리 규정 2-3-2 수업평가 2-3-3 석사학위논문 대체제도	정성 정량 정성
	2-4 교육성과	2-4-1 교육만족도	정량
	2-5 입학 및 학사관리 행정 환류체계	2-5-1 입학 환류시스템 2-5-2 학사관리 환류시스템	정성
3. 학생	3-1 신입생 충원률	3-1-1 신입생 충원률 현황	정량
	3-2 재학생 충원률	3-2-1 재학생 충원률 현황	정량
	3-3 취업률	3-3-1 취업률 현황	정량
	3-4 학생복지 현황	3-4-1 기숙사 수용 3-4-2 의료원 진료감액	정량
	3-5 대학원생 권리장전	3-5-1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및 시행	정성
4. 연구	4-1 대학원생 연구	4-1-1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정량
	4-2 연구윤리	4-2-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시행 4-2-2 산학협력단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시행 4-2-3 연구윤리과목 개설 및 수강	정성
	4-3 논문표절시스템	4-3-1 논문표절 관리시스템 관리 및 적용	정성
	4-4 장학금 지급률	4-4-1 교내외 장학금	정량
5.시설·설비	5-1 교육시설	5-1-1 대학원 학과별 시설	정량

4. 기대효과

- 자가진단 및 평가 시스템의 구축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
- 대외평가에 대비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시 자체평가보고서 및 개선실적 자료로 활용
- 자체평가 분석을 통해 대학원 교육 및 학교 운영에 대한 강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발전 체계를 구축
- 자체평가내용의 대외공시로 교육 수요자 고객인 학생, 학부모, 산업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본 대학의 신뢰도를 얻음

II. 일반대학원 개황

1.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2. 연혁

1983. 10. 29. 대구한외과대학 일반대학원 설립 인가
1983. 11. 25. 초대 일반대학원장 윤길영 박사 취임
1984. 3. 1. 한의학과 석·박사 과정 석사 20명 박사 6명 정원
1986. 2. 20. 제1회 졸업(한의학석사 7명)
1986. 11. 29. 한의학과 박사과정 2명 증원 인가
1987. 2. 20. 제2회 졸업(한의학석사 13명, 한의학박사 1명)
1987. 11. 3. 한의학과 박사과정 4명 증원 인가
1988. 2. 20. 제3회 졸업(한의학박사 3명, 한의학석사 8명)
1989. 2. 20. 제4회 졸업(한의학박사 2명, 한의학석사 7명)
1990. 2. 20. 제5회 졸업(한의학박사 3명, 한의학석사 7명)
1990. 11. 8. 보건학과 박사과정 신설, 박사과정 7명 증원
1991. 2. 20. 제6회 졸업(한의학박사 5명, 한의학석사 9명)
1991. 11. 15. 환경보건학과, 식품과학과 증과 및 석사과정 24명 증원
1992. 2. 20. 제7회 졸업(한의학박사 2명, 한의학석사 6명)
1992. 7. 31. 국어국문학과 증과 및 석사과정 12명, 박사과정(한의학과 6명, 보건학과 4명) 10명 증원
1992. 8. 29. 후기 졸업(한의학석사 3명)
1993. 2. 20. 제8회 졸업(박사 3명, 석사 10명)
1993. 8. 28. 후기졸업 (석사 1명)
1994. 2. 19. 제9회 졸업(박사 8명, 석사 14명)
1994. 9. 14. 간호학과 20명 증과 인가
1994. 10. 21. 석사과정 학과증설(동양철학과) 및 20명 증원인가, 정원 30명
이학석사과정(환경보건학과, 식품과학과) 정원 20명
한의학석사과정 정원 36명, 한의학박사과정 정원 16명
보건학박사과정 정원 13명
1995. 2. 20. 제10회 졸업(박사 6명, 석사 16명)
1995. 8. 24. 후기졸업 (석사 7명)
1995. 9. 16. 학위수여(명예박사 1명)
1995. 10. 18. 생물학과(석사) 20명, 동양철학과(박사) 10명 신설 인가
한의학과(박사) 20명, 보건학과(박사) 20명,
석사과정 학과명칭 변경(환경보건학과 =>환경과학과)
1996. 2. 23. 제11회 졸업(박사 8명, 석사 13명)
1996. 8. 24. 후기 졸업(석사 1명)
1997. 2. 20. 제12회 졸업(박사 14명, 석사 10명, 명예박사 1명)
1997. 8. 20. 후기졸업(석사 7명, 명예박사 1명)
1997. 10. 24. 학위수여(명예박사 1명)
1997. 10. 25. 식품과학과를 생명자원과학과로 명칭 변경
1998. 2. 20. 제13회 졸업(박사 8명, 석사 10명)

1998. 8. 20. 후기 졸업(석사 8명)
1998. 11. 16. 석사과정 학과증설인가(한문학과)
석사과정 학과명칭 변경(동양철학과 =>철학과)
1999. 2. 20. 제14회 졸업(박사 19명, 석사 21명)
1999. 8. 20. 후기졸업(박사 4명, 석사 13명)
석사과정 아동·청소년학과 개설
학위수여(명예박사 1명)
2000. 2. 19. 제15회 졸업(박사 22명, 석사 23명)
2000. 8. 19. 후기 졸업(박사 4명, 석사 6명)
2001. 2. 20. 제16회 졸업(박사 9명, 석사 23명)
2001. 3. 21. 학위수여(명예박사 2명)
2001. 7. 26. 한의학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협동과정(정원외) 신설 인가
2001. 8. 20. 후기 졸업(박사 5명, 석사 7명)
2001. 10. 24. 학위수여(명예박사 1명)
2001. 11. 12. 석사과정 학과명칭 변경 (환경학과 => 지구환경시스템학과)
2002. 2. 20. 제17회 졸업(박사 23명, 석사 34명)
2002. 8. 20. 후기 졸업(박사 1명, 석사 2명)
2003. 2. 20. 제18회 졸업(박사 23명, 석사 30명)
아동청소년학과를 청소년학과로 명칭변경
2003. 8. 20. 후기 졸업(박사 16명, 석사 2명)
2003. 9. 15. 학위수여(명예박사 1명)
2004. 2. 20. 제19회 졸업(박사 29명, 석사 39명, 명예박사 1명)
2004. 8. 20. 후기 졸업(박사 3명, 석사 5명)
2004. 10. 12. 철학과를 동양철학과로 명칭변경
한방식품·화장품학과를 한방식품학과 명칭변경
한방식품·화장품학과를 화장품학과로 명칭변경
한방생명자원학과를 한방자원학과로 명칭변경
건설시스템학과, 환경시스템학과를 건축·환경학과로 통합
2005. 2. 18. 제20회 졸업(박사 32명, 석사 45명)
2005. 8. 19. 후기졸업(박사 1명)
2006. 2. 20. 제21회 졸업(박사 32명, 석사 37명)
2006. 8. 17. 후기 졸업(박사 2명, 석사 2명)
2007. 1. 22. 계약학과(노인의료복지학과) 신설
2007. 2. 21. 제22회 졸업(박사 31명, 석사 42명, 명예박사 4명)
2007. 8. 17. 후기 졸업(박사 1명, 석사 4명)
2007. 9. 15. 학위수여(명예박사 2명)
2007. 9. 18. 화장품학과를 화장품약리학과로 명칭변경
2008. 2. 20. 제23회 졸업(박사 29명, 석사 38명)
2008. 8. 20. 후기 졸업(박사 1명)

2008. 9. 12. 학위수여(명예박사 2명)
 2009. 2. 20. 제24회 졸업(박사 54명, 석사 66명, 명예박사 3명)
 2009. 8. 20. 후기졸업(박사 3명, 석사 3명)
 2010. 2. 19. 제25회 졸업(박사 57명, 석사 45명, 명예박사 1명)
 2010. 6. 25. 학위수여(명예박사 3명)
 2010. 6. 30. 학위수여(명예박사 1명)
 2010. 8. 20. 후기 졸업(박사 9명, 석사 3명)
 2010. 9. 16. 학위수여(명예박사 1명)
 2011. 2. 18. 제26회 졸업(박사 51명, 석사 53명, 명예박사 1명)
 2011. 5. 30. 계약학과(산림비즈니스학과) 신설
 2011. 8. 19. 후기졸업(박사 4명, 석사 2명)
 2011. 8. 29. 계약학과(동양사상학과) 신설
 2011. 11. 19. 건축·환경학과를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로 명칭변경
 2012. 2. 20. 제27회 졸업(박사 35명, 석사 65명, 명예박사 1명)
 2012. 8. 20. 후기졸업(박사 19명, 석사 2명, 명예박사 1명)
 2012. 8. 23. 일반대학원장에 유왕근 박사 취임
 2013. 2. 20. 제28회 졸업(박사 35명, 석사 55명, 명예박사 2명)
 2013. 8. 20. 후기졸업(박사 9명, 석사 5명)
 2013. 9. 23. 일반대학원장에 김수민 박사 취임
 2014. 2. 20. 제29회 졸업(박사 44명, 석사 63명)
 2014. 8. 20. 후기졸업(박사 7명, 석사 1명)
 2015. 2. 20. 제30회 졸업(박사 56명, 석사 58명, 명예박사 1명)
 2015. 3. 1. 의과학과, 제약공학과, 평생교육융합학과 석사 과정 신설
 2015. 8. 20. 후기졸업 (박사 6명)
 2016. 2. 19. 제31회 졸업(박사 51명, 석사 64명)
 2016. 3. 1. 중독융합학과 석/박사 과정, 평생교육융합학과 박사 과정 신설
 2016. 8. 19. 후기 졸업(박사 10명, 석사 3명)
 2017. 2. 20. 제32회 졸업(박사 66명, 석사 64명)
 2017. 2. 15. 연구실적 우수장학금 지급기준 마련
 2017. 3. 1. 화장품소재공학과, 장애아동보육학과 석사과정 신설
 2017. 8. 18. 후기졸업(박사 14명)
 2018. 2. 19. 제33회 졸업(박사 38명, 석사 54명)
 2018. 5. 24. 명예박사학위 수여(김근한)
 2018. 8. 19. 후기 졸업(박사 6명, 석사 1명)
 2019. 2. 20. 제34회 졸업(박사 42명, 석.박사통합 3명, 석사 59명)
 2019. 4. 11. 명예박사학위 수여(김세현)
 2019. 8. 18. 후기 졸업(박사 9명, 석사 4명)
 2020. 2. 20. 제35회 졸업(박사 31, 석사 78명)
 2020. 8. 14. 후기 졸업(박사 9명, 석사 10명)

2021. 2. 19 제36회 졸업(박사 28명, 석.박사통합 1명, 석사 74명)
2021. 2. 19 명예박사학위 수여(황영웅)
2021. 3. 1. (박사)치유과학과, 제약공학과, (석사)뷰티케어학과 신설
(석사)화장품소재공학과->화장품공학과 변경
2021. 8. 14 후기 졸업(박사 10명, 석사 19명)
2022. 2. 18 제37회 졸업 전기 졸업생(박사 39명, 석사 65명)
총 졸업생(박사 1,069명, 석사 2,540명, 명예박사 35명)
2022. 3. 1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사과정 신설
일반대학원 동물보건학과 석사과정 신설
한방산업대학원 약선조리의식산업학과->푸드케어약선학과 변경
2022. 8. 19 후기 졸업(박사 9명, 석사 23명)
2023. 2. 20 제38회 졸업 전기 졸업생(박사 36명, 석사 81명)
총 졸업생(박사 1,114명, 석사 2,644명, 명예박사 35명)
2023. 3. 1 일반대학원 치유산업학과 석사과정 신설
일반대학원 동양문화산업학과 석사과정 신설
일반대학원 푸드케어약선학과 박사과정 신설
일반대학원 동물보건학과 박사과정 신설
보건복지대학원 해양교육문화특성화학과 석사과정 신설
보건복지대학원 재활의료공학과 석사과정 신설
보건복지대학원 청소년가족상담학과->청소년상담학과 변경
보건복지대학원 미술치료학과->미술심리치료학과 변경
2023. 8. 18 후기 졸업(박사 48명, 석사 35명)

3. 학제 및 학과 현황

(2022. 4. 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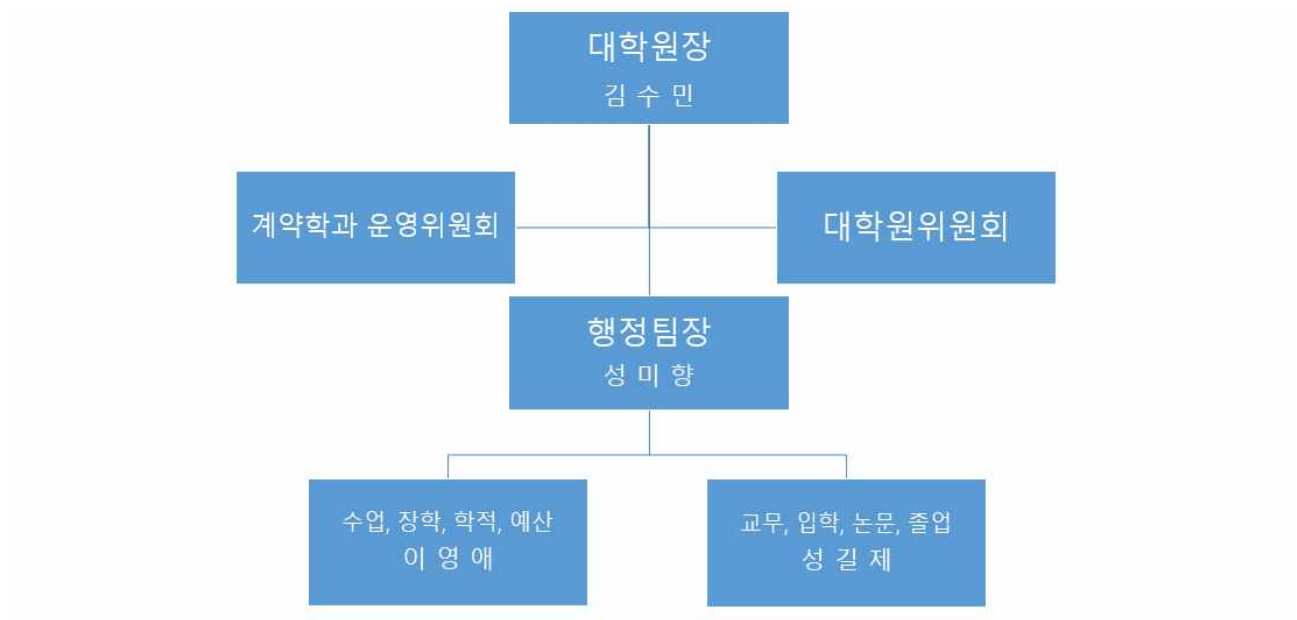
과정	총정원(명)	학과명	재학생수(명)	휴학생수(명)	제적생수(명)
석사	64	제약공학과	5	0	0
		화장품공학과	9	1	0
		한의학과	28	3	2
		청소년학과	8	2	0
		평생교육융합학과	20	0	0
		장애아동보육학과	10	1	0
		특수교육학과	3	0	0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7	1	0
		의과학과	6	1	0
		중독융합학과	1	1	0
		한방식품학과	2	1	0
		한약개발학과	11	2	0
		화장품약리학과	5	0	0
		뷰티케어학과	6	0	0
		동물보건학과	5	0	1
		학연		한의학과/한국한의학연구원	1
소계		15개 학과	127	13	3
박사	46	한의학과	23	5	1
		제약공학과	4	0	0
		복지관리학과	15	0	1
		평생교육융합학과	13	0	0
		중독융합학과	5	0	0
		한방식품학과	5	1	1
		한약개발학과	6	1	0
		보건학과	11	0	1
		치유과학	0	2	0
		학연		한의학과/한국한의학연구원	0
석·박사통합		한의학과	7	0	0
소계		9개 학과	89	9	4
총계	110	24개 학과	216	22	7

(2023. 4. 1. 기준)

과정	총정원(명)	학과명	재학생수(명)	휴학생수(명)	제적생수(명)		
석사	74	제약공학과	3	0	0		
		화장품공학과	5	1	1		
		한의학과	19	4	3		
		청소년학과	5	2	0		
		평생교육융합학과	17	0	0		
		장애아동보육학과	10	1	1		
		동양문화산업학과	8	0	0		
		특수교육학과	9	0	0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4	2	1		
		의과학과	6	2	0		
		중독융합학과	0	2	0		
		한방식품학과	1	1	0		
		한약개발학과	10	3	1		
		화장품약리학과	3	0	0		
		치유산업학과	12	0	0		
		뷰티케어학과	7	0	0		
		동물보건학과	8	1	1		
		학연		한의학과/한국한의학연구원	1	0	0
		소계		17개 학과	128	19	8
박사	46	한의학과	19	5	1		
		제약공학과	2	0	1		
		복지관리학과	12	4	1		
		평생교육융합학과	12	0	1		
		중독융합학과	3	0	0		
		한방식품학과	2	2	0		
		한약개발학과	8	1	0		
		보건학과	7	1	0		
		푸드케어약선학과	3	0	0		
		치유과학과	6	2	0		
		동물보건학과	4	0	0		
		학연		한의학과/한국한의학연구원	0	0	0
석·박사통합		한의학과	7	0	0		
소계		11개 학과	85	15	4		
총계	120	28개 학과	213	34	12		

4. 구성원 현황

4-1. 업무조직도



4-2. 구성원

대학원장	행정직	조 교	합 계
1	3	2	6

4-3 업무분장

직위	성명	개인별 분장업무	비고
대학원장	김수민	대학원업무 총괄	
팀장	성미향	대학원업무 진행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학제개편에 관한 업무 ◦ 정원관리 ◦ 교무, 수업, 학적업무 전반의 관리 ◦ 지도교수 배정 관리 ◦ 입학전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대학원 및 각 학과 행사계획 및 진행 ◦ 대학원위원회 운영 ◦ 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 관리 ◦ 총장 지시사항 및 특별추진과제 수행 	
팀원	이영애	학적, 수업, 예산, 장학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예산 신청 및 지출관련 업무 ◦ 교과과정 개편 및 강좌 개설 관련 업무 ◦ 수강신청, 강사, 비전임 등 수업 관련 업무 ◦ 학습관리 및 현장학습관련 업무 ◦ 학생지도(상벌 등) 관련 업무 ◦ 학적(휴.복학, 제적, 자퇴) 및 재입학 관련 업무 ◦ 재적생 변동상황 관리 및 각 기관 보고 ◦ 성적관리 및 학사관리에 관한 업무 ◦ 장학, 학비감면 및 한국장학재단 관련 업무 ◦ 고등교육통계 및 정보공시에 관한 업무 ◦ 생명윤리위원회(IRB)에 관한 업무 	
팀원	성길제	입학, 교무, 위원회, 논문, 졸업, 계약학과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전형에 관한 제반 업무 ◦ 학위논문 계획 작성 및 관리, ◦ 졸업사정, 학위수여 관련 업무 ◦ 학칙 등 제규정 제정 및 변경 관련 업무 ◦ 학제개편(신설, 중지 등)에 관한 업무 ◦ 취업통계, 고등교육통계 및 정보공시에 관한 업무 ◦ 대학원위원회 및 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 계약학과 입학전형, 산업체 계약체결, 재직 확인 및 4대 보험, 교육부 운영현황 제출 	

III. 평가 결과

1. 발전계획 및 특성화

1-1. 교육목적 및 목표

우리 대학원은 국가, 사회의 요구 및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 그리고 학문적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교육목표를 교육 실천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등 대학의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1-1. 발전 및 특성화 계획 평가

우리 대학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명료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를 교육실천의 지표로 삼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1-1-1. 대학이념

한의학의 발전과 민족의학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함.

1-1-2. 교육목적

- 심층적 연구역량을 갖춘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창의와 융합적 사고를 갖춘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윤리와 실천적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함.

1-1-3. 교육목표

- 심층적 연구역량을 갖춘 전문인
 - 심도있는 전문 지식과 이론 체계의 습득
 - 전공 분야에 대한 분석과 실험 능력 배양
 - 지식과 실험의 창의적 융합 능력 함양
- 창의와 융합적 사고를 갖춘 전문인
 - 기존의 이론체계에 대한 분석 능력의 습득
 - 연구 결과에 대한 창의적 응용 능력 배양
 - 학제간 전문 지식의 융합 능력 함양

- 윤리와 실천적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
 - 올바른 연구 윤리 정신에 근거한 학술 능력 습득
 -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배양
 - 전인적인 인격자로서의 역량 함양

◎ 평가결과 분석

- 대학원 발전계획, 특성화부분,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실천적 체계도가 확립되어 있어 자체평가 준거에 의거하여 정성평가결과 충족함.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우리 대학원은 요구분석에 근거한 실현가능한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대학원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우리 대학원은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원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

우리 대학원의 장단기발전 계획 및 특성화 계획은 대학원구성원의 요구분석 등에 근거하여 수립되어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특성화 및 발전 추진의 필요성
 - 지역화와 더불어 세계화를 이끄는 리더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산업 및 RnD 특구 그리고 본교의 글로벌 인프라를 기반으로 특성화 전략 및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었음.
- 특성화 및 발전 추진 목표
 - 우리 대학의 인재상인 “건강하고 창의적인 실천지성”과 우리 대학의 비전인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학”에 맞추고, 대학원의 한방산업과 보건복지 및 교육이라는 특성화된 성격을 살려 대학원 특성화 및 발전추진 목표를 “글로벌 K-리더 양성”이란 비전으로 수립하였음.

목표	글로벌 K-리더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층적 연구역량을 갖춘 전문인 창의와 융합적 사고를 갖춘 전문인 윤리와 실천적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 		
교육	역량강화	융합 & 실용	글로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 기반조성지원 교수법 개발지원 교수-학생-기업전문가 공동교육시스템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협력 타 교육기관과의 교류 학과간 통합교과목 개발 통합과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교출신 진학유도 전문대-대학-대학원지원자 유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제교류지원 자매대학 대학원교류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교원학생 확보 연구시설 공동활용 특성화에 부합된 연구분야 연구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용적 지식연구강화 산학관 협력을 통한 행정 지원체계 강화 산업체와 교수의 경명 및 기술자문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대학 협력네트워크 강화 비교과과정 교육프로그램 지원 연구년제도 활용
취업 & 산학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합 교육된 인재의 공동 산학연구 신입기간 교수-학생 간의 업무지원 시스템 각종 MOU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기업별 특성화된 실무인재 배출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원 홍보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매대학내 연구센터 및 가족기업 등 네트워크 공유 국내 가족기업 및 연구센터 홍보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원 홍보강화

<그림 1-2-1-1> 특성화 및 발전 추진 목표 체계도

◎ 평가결과 분석

- 대학원 장단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대학원 구성원의 요구분석에 근거하여 수립되어 자체평가 준거에 의거하여 정성평가 결과 충족함.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평가

우리 대학원은 장단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원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주요 특성화 및 발전 전략 체계

발전목표	발전전략	전략과제	세부실행과제
한방웰니스 산업분야 글로벌리더양성	최적의 교육연구체제 구축	선진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학과별 교육목표 및 특성화 방향 교육과정 설계
			교수 역량강화,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학사관리체제 고도화
		대학원생 복지증진 확대	대학원 전용공간 및 기자재 확충
			다양한 장학제도 실시 및 재정 확보
			학생회 등 자치기구 활성화 및 지원

<표 1-2-2-1> 리더의 양성 교육부문

특성화 목표	발전 전략	전략 과제	실행 계획
글로벌 K-리더 양성	리더양성교육	역량강화	교수1인당 적절한 지도학생 배정
			다양한 교수법 개발지원
			현장적응 교육 강화(현장견학 등)
		융합 & 실용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
			우수 학생 인센티브
			우리학교 출신 지원자 유도
			지역대학과의 교육 교류 활성화
		글로벌	외국인 우수 유학생 유치 강화
			산학협력 체제 구축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교류확대

<표 1-2-2-2> 연구기반조성 및 연구역량강화 부문

특성화 목표	발전 전략	전략 과제	실행 계획
글로벌 K-리더 양성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 강화	역량강화	우수교원확보 및 다양한 연구 유도
			연구시설/자료 활용 네트워크의 구축
			우수학생 확보 및 연구 지원
			학문간 교류협력 강화
			대학원 전용공간 및 기자재 확충
		융합 & 실용	지역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지역 내 연구소와 공동연구활성화
			동문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글로벌	지역대학과의 연구교류 활성화
			산학협력 연계체계 강화
			국제교육교류센터 프로그램 참가 확대

<표 1-2-2-3> 취업인프라의 구축 및 환류시스템 개시 부분

특성화 목표	발전 전략	전략 과제	실행 계획
글로벌 K-리더 양성	리더 취업활성화 및 환류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졸업생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기업현장 교육성과 확인 시스템
			학과별 기업연계 활성화(MOU 등)
		융합 & 실용	특성화 실무인재배출
			학교-기업간 기술개발 feedback 시스템
		글로벌	국내 기업 및 연구센터 대상 홍보강화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원 홍보강화			

○ 연차별 과제 추진계획

<표 1-2-2-4> 리더의 양성 교육부문

전략 과제	실행 계획	현재 (2023)	단기		중기 (‘26~’28)	장기 (‘29~’31)
			2024	2025		
역량강화	교수1인당 적절한 지도학생 배정	○	○	○	○	○
	다양한 교수법 개발지원	○	○	○	○	○
	현장적응 교육 강화(현장견학 등)	○	○	○	○	○
융합 & 실용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	○	○	○	○	○
	우수학생 인센티브		○	○	○	○
	우리학교 출신 지원자 유도	○	○	○	○	○
	지역대학과의 교육교류 활성화		○	○	○	○
글로벌	외국인 우수 유학생 유치 강화	○	○	○	○	○
	산학협력 체제 구축		○	○	○	○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교류확대	○		○	○	○

<표 1-2-2-5> 연구기반조성 및 연구역량강화 부문

전략 과제	실행 계획	현재 (2023)	단기		중기 (‘26~’28)	장기 (‘29~’31)
			2024	2025		
역량강화	우수교원확보 및 다양한 연구 유도	○	○	○	○	○
	연구시설/자료 활용 네트워크의 구축		○	○	○	○
	우수학생 확보 및 연구 지원	○	○	○	○	○
	학문간 교류협력 강화	○	○	○	○	○
	대학원 전용공간 및 기자재 확충	○	○	○	○	○
융합 & 실용	지역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	○
	지역 내 연구소와 공동연구활성화		○	○	○	○
	동문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	○	○	○	○
글로벌	지역대학과의 연구교류 활성화		○	○	○	○
	산학협력 연계체계 강화	○		○	○	○
	국제교육교류센터 프로그램 참가 확대	○	○	○	○	○

<표 1-2-2-6> 취업인프라의 구축 및 환류시스템 개시 부문

전략 과제	실행 계획	현재 (2023)	단기		중기 (‘26~’28)	장기 (‘29~’31)
			2024	2025		
역량강화	졸업생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	○	○	○	○
	기업현장 교육성과 확인 시스템			○	○	○
	학과별 기업연계 활성화 (MOU 등)	○		○	○	○
융합 & 실용	특성화 실무인재배출		○	○	○	○
	학교-기업간 기술개발 feedback 시스템	○		○	○	○
글로벌	국내 기업 및 연구센터 대상 홍보강화		○	○	○	○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원 홍보강화	○	○	○	○	○

● 평가결과 분석

- 대학원 장단기발전 계획 및 특성화 전략 체계를 「리더의 양성」, 「연구기반조성 및 연구역량강화」, 「취업인프라의 구축 및 환류시스템 개시」 3영역 나누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안,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 평가로 대학원운영에 반영하고자 함. 이러한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은 자체평가 준거에 의거하여 정성평가 결과 충족함.
- 연차별 재원계획 투자 부분은 대학에 비하여 상당히 미비하므로 대학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투자계획 수립필요.

1-3. 자체평가

우리 대학원은 교육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시하며, 자체평가 결과를 교육과 대학원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1-3-1. 자체평가

우리 대학원은 교육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강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여 도출된 발전방향을 교육과 대학원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대학원운영 체제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자체평가의 개요

- 우리 대학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주기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보공시 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정보공시제,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준거, 대학원 장단기발전계획 등을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
-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행정부서 및 학과 단위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의 변화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평가결과 분석

- 교육 및 운영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원 운영에 적극적인 반영을 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준거에 의거하여 정성평가결과 충족함.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원의 강·약점을 대학원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매년 대학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표 2-2-1-1>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학년도	총 개설 강의학점(A)	전임교원 담당학점(B)	비율(B/A*100)
2022	652.5학점	589.5학점	90.3%
2023	681학점	616학점	90.5%

<표 2-2-1-2> 타대학원 대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현황 비교

학년도	전국(%)	대구·경북(%)	우리 대학(%)
2022	80.8%	86.2%	90.3%
2023	82.3%	85.1%	90.5%

2-2-2. 교수1인당 지도학생수

우리 대학원은 교육과 학생지도를 위해 적정한 지도학생수를 유지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6명미만)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우리 대학원은「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표 2-2-2-1> 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지도교수 인원수	지도교수 배정학생 인원수	지도교수별 학생수
67	202	3명

● 평가결과 분석

- 일반대학원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2022년 90.3%, 2023년 90.5%로, 전국 및 대구·경북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대학원 강의의 질적 우수성이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반대학원의 교수1인당 지도학생수는 3명으로 대학원학칙시행세칙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의 안정적이며 질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있음.

2-3. 학사관리

우리 대학원은 학사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성적과 수업평가 등 엄정하고 적절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2-3-1. 학사관리 규정

우리 대학원은 성적관리, 수업평가 등 엄정하고 적절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우리 대학원은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엄정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음
- 주기적으로 학사관련 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학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2-3-2. 수업평가

우리 대학원은 타당한 평가문항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업평가를 실시하며,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수업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우리 대학원은 학생의 수업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수업평가의 내용은 대학원 수업 및 교육의 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요구를 반영하고 합리적 수업평가가 되도록 학기별 혹은 학년별 변동이 가능하도록 함.

<표 2-3-1-1> 일반대학원 수업평가 결과

학년도	학기	수강인원	수업평가 참여인원	응답률	평가점수 평균
2022	1	536	433	80.78	95.47
	2	332	254	76.51	94.42
2023	1	413	351	84.99	95.07
	2	409	292	71.39	94.49

◎ 평가결과 분석

- 우리 대학원은 타당한 평가문항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수합하여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3-3. 석사학위논문대체 제도

우리 대학원은 기존 학위논문만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대학원 학칙 제30조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3조2에 의거하여 학과에서 지정한 석사학위논문대체 요건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2021년 2학기부터 도입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석사 학위 취득 방법은 학위논문제출, 추가학점(9학점) 이수(총 33학점 이수), KCI등재학술지 이상 학술지논문게재 등 3가지가 있음.
- 재학생은 2학기 이상 신청이 가능하고 수료 후에도 “수료자 연구생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 일반대학원 각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학과 등을 명시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지침”을 마련 함.

< 대학원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규정 참조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5조(이수학점) ①학생이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60학점이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 학위논문대체 요건으로 추가학점 이수를 신청하는 자는 9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대학원 무논문청구자는 6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0. 4, 2015.10.20.)(개정 2021.06.24.)(개정 2023.09.06)

제28조(학업성적) ②합격/불합격만을 표시할 교과목은 P(합격), F(불합격)로 표시하고 점수, 평점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수료자 연구생 등록으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평점평균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2.19.)(개정 2021.06.24.)

제30조(수료자의 등록 및 수료자 연구생 등록) ①수료자 등록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석사연계과정, 박사학위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 취득 목적으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변경 2012.10. 4.)(개정 2021.06.24.)(개정 2023.09.06)

②수료자 연구생 등록 :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석사연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논문대체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신설 2021.06.24.)(개정 2023.09.06)

③수료자 등록 및 수료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06.24.)

제33조(납입금)⑧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수료자로서 학위논문대체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06.24.)

구 분		징수금액
추가학점 이수 (수료자 학점 등록)	1학점부터 3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7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KCI급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게재		등록금 면제

제41조(학위수여 자격요건) ①석사학위 수여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학점이상 취득한 자(추가학점 학위논문대체신청자는 33학점 이상, 무논문학위청구자는 30학점 이상 취득)(변경 2021.06.24.)
2.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3.0(B등급)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특수대학원 외국어시험 제외)(개정 2022.08.25.)
4. 학위청구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무논문학위청구자는 제외)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학위논문대체를 인정받은 자 (변경 2020.02.19.)(개정 2021.06.24.)
5. (삭제, 2009.05.11.)
6. 소정의 연구지도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16. 7. 1.>

②박사학위 수여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6학점이상 취득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0학점이상 취득한 자) (개정2015.10.20.)
2.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3.0(B등급)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20.08.25.)
5. (삭제, 2009.05.11.)
6. 소정의 연구지도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16. 7. 1.>

③명예박사학위 수여 자격요건은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④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및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무논문학위청구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3학기 등록후 매학기 소정기간에 무논문학위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 경유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취소하고자 할 시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석·박사통합과정을 이수중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가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2.10. 4.)

⑦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석사연계과정의 학위논문대체 요건은 추가 9학점 이수 또는 KCI급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1.06.24.)(개정 2023.09.06)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3조3(수료자 연구생 등록) ①학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자 연구생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대체로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한다.(신설 2021.06.24.)

②수료자 연구생 등록 시기는 수료 후 소정의 기간내로 하며 등록금을 부가할 수 있다.(신설 2021.06.24.)

③수료자 연구생 등록을 신청한 자가 졸업이 불가할 경우 재차 수료자 연구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횡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06.24.)

제22조(연구지도) ①연구지도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 및 학위논문대체 신청자에게 지도교수가 부과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이며, 학점 및 시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지도에 따른 소정의 금액을 지도교수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변경 2021.06.24.)

제23조(수강신청 등) ④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위논문대체로 학위 취득을 위한 추가학점이 필요할 경우 소정의 기간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정정기간내에 수강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06.24.)

제4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4회이상(학·석사연계과정 3회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또는 학칙 제25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조기에 이수한 자.(개정 2017.04.24.)(개정 2023.09.06.)
2. 소정의 연구지도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개정 2016. 7. 1.)
3.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B등급)이상인 자
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논문심사 및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변경08. 1. 2)

②제①항 5호와 관련하여 학위논문 대체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 및 계약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심사 및 구두시험을 학위청구논문 대체 요건 충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학과 해당 학생은 2학기 초 학위청구논문 대체 희망원을 제출하고, 3학기 초까지 학위청구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대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각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02.19.)(변경 2021.06.24.)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학칙 제41조 학위수여 자격요건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42조 학위논문 제출자격 2항에 관한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논문대체(이하 “논문 대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시기 및 대상)

- ① 시행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 ② 대상 : 일반대학원 석사 재학생 및 수료생

제3조(신청 및 절차)

- ① 논문 대체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2학기 이후에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대학원장에 제출해야하며 동 지침 제4조에서 지정한 학과별 논문대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재학생이 수업연한 내 대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수료 이후 논문대체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수료자 연구생 등록”을 하고 동 지침 제4조에서 지정한 학과별 논문대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료자 연구생 등록” 후 대학원학칙 제33조에 따라 납입금이 부과될 수 있다.
- ③ 논문 대체 신청 변경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학위논문을 청구하거나 다른 이유로 논문대체를 취소할 경우 석사학위논문대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논문 대체 신청자는 논문대체요건 이외에 “연구지도”(P/F)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한다.

제4조(논문대체요건) ① 학과별 논문 대체 요건은 <별표>와 같다.

② 학과별 논문 대체 요건은 다음 각 호 중 학과 교수회의록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1. 추가학점(9학점) 이수

- 가. 재학생은 석사학위 수료요건인 24학점에 추가 9학점을 이수할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재학기간동안 추가 9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수료 후 수료자 연구생 등록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 나. 2021학년도 2학기 이전 수료생은 논문대체 신청 전 이수학점과 관계없이 추가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수료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자체 평점평균에서 제외한다.

2.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

- 가. 국제전문학술지 : SCI, SSCI, A&HCI, SCI-E, Scopus, Index Medicus
- 나. 국내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 다. 논문대체 신청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일 경우에만 인정
- 라. 게재일 기준 : 논문 게재일은 입학 후 졸업해당학기 학위논문 제출마감일까지 게재된 것을 인정한다(2022.04.25. 변경)

제5조(논문대체요건의 인정 기준)

추가학점 이수를 통해 학위논문 대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 신청서 제출 후 추가학점 9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학위논문 제출마감일까지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

지 논문 게재 서류를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제정) 이 내규는 202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정일 이전 폐지된 학과의 수료생도 논문대체 신청이 가능하다.

부 칙

1. (개정) 이 내규는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정일 이전 폐지된 학과의 수료생도 논문대체 신청이 가능하다.

부 칙

1. (개정) 이 내규는 202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정일 이전 폐지된 학과의 수료생도 논문대체 신청이 가능하다.

부 칙

1. (개정) 이 내규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정일 이전 폐지된 학과의 수료생도 논문대체 신청이 가능하다.

<별표> 일반대학원 학과별 석사학위논문 대체 요건

학 과	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대체 요건	
		추가학점 이수	학술지 논문게재
동양철학과	○	X	X
청소년학과	○	○	○
평생교육융합학과	○	○	○
장애아동보육학과	○	○	○
한방식품학과	○	○	○
화장품약리학과	○	○	○
한약개발학과	○	○	○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	○	○
의과학과	○	○	X
중독융합학과	○	○	○
뷰티케어학과	○	○	○
한의학과	○	○	○
제약공학과	○	○	○
화장품공학과	○	○	○
동물보건학과	○	○	○
특수교육학과	○	○	○
동양문화산업학과	○	○	○
치유산업학과	○	○	○

2-3-4. 학·석사연계과정 제도

우리 대학원은 「대구한의대학교 학칙」 제35조의2 및 「대학원 학칙」 제3조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2023년 2학기말에 규정을 제정하였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을 원칙으로 하며, 학사학위과정은 3년 6개월, 석사학위과정은 1년 6개월로 수업을 한다.
- 연계과정 예비생은 학부 5학기 또는 6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정원은 석사학위과정의 30% 이내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연계과정 예비생으로 선발되면 매학기 학부 최대 수강학점에서 학부 교과목 3학점을 추가할 수 있으며, 학부 졸업시까지 대학원 연계학과 교과목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학부와 대학원 관련부서의 제도 마련을 통해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석사연계과정 운영규정”을 마련 함.

학 · 석사연계과정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한의대학교 학칙」 제35조의2 및 「대학원 학칙」 제3조에 의한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석사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위 간 연계과정을 말한다.

제2장 연계과정(예비생 과정)

제3조(예비생 선발) ①연계과정 예비생 선발은 매 학년도 학부 5학기 또는 6학기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계과정 예비생 지원서는 평생멘토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하고, 대학원행정팀은 예비생 선발결과를 학사운영팀으로 통보한다.

제4조(모집단위 및 인원) ①연계과정생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본교 학칙에 명시된 조기졸업 제외 학과는 신청 불가) 석사과정에 한한다.

②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자격) 연계과정 예비생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로 한다.

1. 학부 5학기 또는 6학기를 이수한 자로서 총 평점평균 3.00점 이상인 자

2. 평생멘토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학사학위과정의 주전공(제1전공) 및 다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 한하여 지원 가능

제6조(지원서류) 신청지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 지원서 1부
2. 추천서 1부
3. 서약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제7조(수강신청) ①연계과정 예비생으로 선발된 자는 매학기 학부 최대 수강학점에서 학부 교과목 3학점을 추가할 수 있으며, 학부 졸업시까지 대학원 연계학과 교과목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본교 학부에서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의 학점은 학부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조(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을 원칙으로 하며, 각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3년 6개월
2. 석사학위과정: 1년 6개월

제9조(학사과정 졸업 및 특례) ①연계과정 예비생은 졸업논문 및 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를 면제한다.

②각 학과의 졸업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3.0 이상으로서 대학원 진학이 최종 결정되어 등록을 마친 후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연계과정 예비생은 7학기초 소정기간에 연계과정 조기졸업 신청서를 교학처 학사운영팀으로 제출하고, 7학기말 소정기간에 연계과정 대학원 지원서를 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연계과정(대학원 과정)

제10조(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①연계과정 예비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연계과정 예비생 자격을 상실한다.

1. 연계과정 예비생으로 선발된 후 휴학 한 경우
2. 연계과정 예비생으로 선발된 후 대학원 연계 학과의 과목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3. 연계과정 예비생으로 선발된 후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경우
4. 학사과정 조기졸업요건 미충족한 경우
5. 대학원 신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계과정 예비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학사과정의 8학기를 정규등록을 하여 「대구한의대학교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대학원 등록 및 입학) ①대학원 진학이 최종 결정된 자는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연계과정생은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③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내 수료를 못할 경우에는 4학기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분장 및 준용규정

제12조(사무분장) 연계과정생의 학부과정은 교학처 학사운영팀, 대학원과정은 대학원행정팀에서 관장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사학위과정생은 「대구한의대학교 학칙」을 석사학위과정생은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4. 교육성과

우리 대학원은 국가 사회의 요구 및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 그리고 학문적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원 구성원들이 교육목표를 교육 실천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등 대학원의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4-1. 교육만족도

우리 대학원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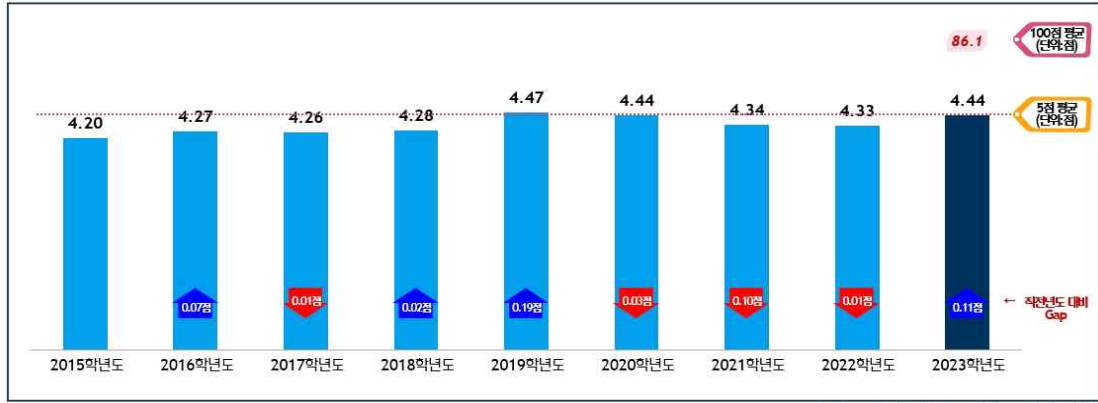
준거특성	정량 4점 이상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우리 대학원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만족도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대학원운영에 반영하여 교육만족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대학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만족도조사 결과를 학생만족도 제고와 관련된 교육, 복지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을 종합하여 심의, 조정함으로써 종합적인 학생만족을 실현하고자 함.

<표 2-4-1-1> 교육만족도

2023년 대구한의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의 종합 만족도 점수는
5점 평균 기준 4.44점, 100점 평균 기준 86.1점임
5점 평균의 경우 2022년(4.33점) 대비 0.11점 상승한 수준임

[연도별 종합 만족도]



(Base: 전체 응답자, N=85, 단위: 점)
(100점 평균 환산법 : 1=0점, 2=25점, 3=50점, 4=75점, 5=100점)

**2023년 만족도 점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100점 평균 추가임

※ 5점 척도 만점. 5점: 매우 좋다, 4점: 좋다, 3점: 보통이다, 2점: 좋지 않다, 1점: 매우 좋지 않다
대학원생의 종합 만족도의 경우 소속별로는 산학계약과정이 상대적으로 만족도 점수 높음
석사보다는 박사가, 연령대별로는 30대의 만족도 높음

[영역별 종합 만족도]



(Base: 전체 응답자, N=85, 단위: 점)
(100점 평균 환산법 : 1=0점, 2=25점, 3=50점, 4=75점, 5=100점)

※ 교육혁신원 교육성과관리센터 주관 대학만족도조사 결과 근거 작성

◎ 평가결과 분석

○ 우리 대학원의 교육만족도는 2022년 4.33점으로 조금 하락하였으나, 2023년 4.34점으로 조금

상승해서, 학생중심의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학생

3-1. 신입생 충원율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의 교육목적 실현에 적합한 학생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 충원, 유지하고 있으며, 상담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재학생들의 대학원 생활 적응, 학업 및 진로 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3-1-1. 신입생 충원율 현황

우리 대학원은 정부의 학생 선발 정책 및 대학원의 교육목표 등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충원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전국 평균)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우리 대학원 학생 선발 기준 수립의 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학제개편을 통해 대학원별 정원을 확정하고, 규정을 변경하며, 대학원위원회 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전기 모집 요강은 9월에 확정하여 학생을 선발함.
- 학생 선발 절차 및 선발 시행은 수립된 모집요강 전형 방법에 따라 학생의 성적을 공정하게 산출하며, 면접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감독하에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음.
- 입학전형에 학과장 입시위원 운영을 통해 학생선발 절차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하게 입시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우리 대학원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전형별 홍보활동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원 특성화에 맞춘 입시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표 3-1-1-1> 연도별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현황

학년도	입학 정원자수(A)	입학 인원자 수(B)	지원자 수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B/A)*100
2022	110	148	121 (정원외 11명)	100%
2023	120	155	127 (정원외 9명)	98.3%

<표 3-1-1-2> 타 대학원 대비 연도별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현황 비교

학년도	전국(%)	대구.경북(%)	우리 대학(%)
2022	80	78.54	100.0
2023	80	78.8	98.3

<표 3-1-1-3> 입학정원 100~200명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정원내) 현황 비교

학년도	전국 대학(%)	우리 대학(%)
2022	83.83	100.0
2023	86.04	98.3

● 평가결과 분석

- 일반대학원의 경우 지난 5년간 신입생 충원율은 100%를 달성하였고, 2022년 98.3%를 달성하였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국 평균 신입생 충원율 보다 2022년에는 20%, 2023년 19.5% 높고, 지역 대학과의 비교에서도 2022년 21.46%, 2023년 19.5% 높다.

3-2. 재학생 충원율

우리 대학원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3-2-1. 재학생 충원율 현황

우리 대학원은 타대학의 평균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학생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하였으며,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함.
- 재학생 중도탈락률 최소화를 위해 학과 및 관련 부서에서 자퇴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을 하고 있으며 미복학자 및 휴학신청자들에 대해 지도교수 및 학과장과 상담 후 대학원장 승인에 의해 최종 휴학을 승인함.
- 지도교수를 통해 학생과 교수 사이의 친밀감을 고취하고 입학에서 졸업까지 평생 상담 로드맵에 따라 지도함.

<표 3-2-1-1> 재학생 충원율 현황

학년도	재학생 수(A)	편제 정원수(B)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A/B*100)
2022	238	225	94.2
2023	229	234	89.3

<표 3-2-1-2> 타 대학원 대비 재학생 충원율 현황 비교

학년도	전국(%)	대구경북(%)	우리 대학(%)
2022	78.18	78.96	94.2
2023	77.16	78.48	89.3

● 평가결과 분석

- 일반대학원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2022년에는 94.2%, 2023년에는 89.3%로 높은 수준의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을 보임.
-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국 평균 재학생 충원율 보다 2022년에는 16.02%, 2023년 12.14% 높고, 지역 대학과의 비교에서도 2022년 15.24%, 2023년 10.82% 높다.

3-3. 취업률

우리 대학원은 융·복합 교육 및 산학연과 연계된 집중적 연구 지원을 통해 전공 영역뿐만 아니라 전공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분야의 취업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취업인프라 및 환류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3-3-1. 취업률 현황

우리 대학원은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정수준 이상의 졸업생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결과	총족(P)
------	----	--------	-------

- 대학원생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역 산업체 및 연구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현장실습 및 공동연구를 실시함.
- 교수와 기업연구자의 학생에 대한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수는 기업에 자문 및 컨설

팅을 지원하고, 기업은 학생의 실용연구에 대한 테마, 기술 및 연구장비를 지원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방생명자원센터와 기술사업화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창업 및 기술화 사업에 대학원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역특화산업인 한방산업 등 입주자에 대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연계형 창업지원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화된 인력양성프로그램에 대학생들에게 제공함.
- 우리 대학원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산업체와 산업연구기관와의 산학협력 MOU 및 지역기업과의 가족기업 체결을 통한 산학연 연계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3-3-1-1> 취업률 현황(정보공시 기준)

공시연도	취업대상자 수	취업률(%)
2021	99	86.7%
2022	96	79.8%

◎ 평가결과 분석

- 일반대학원 연도별 취업률은 정보공시 기준으로 2021년에는 86.7%, 2022년에는 79.8%로 타 대학원에 비해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음.
- 사회여건의 어려움으로 이후 취업률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80% 내외의 취업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3-4. 학생복지

우리 대학원은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숙사, 체육시설, 의료원 진료 감면, 기타 복지시설 등을 구비하여 학생들의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3-4-1. 기숙사 수용

우리 대학원은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기숙사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숙사 지원학생들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결과	충족(P)
------	----	--------	-------

- 대학원생 가운데 기숙사 입주를 원하는 학생에게 우선 배려하여 방을 배정해주고 있으며, 삼성 캠퍼스 행복기숙사 및 수성캠퍼스 내 기숙사 배정을 통해 원활한 캠퍼스 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 생활관관생 만족도조사를 통해 기린생활관 학생들의 생활관 만족도를 제고함.

<표 3-4-1-1> 대학원 기숙사 수용 인원 및 수용율 현황

학년도	기숙사 지원자수	수용 대학원생 수	기숙사 수용률(%)
2022	5	5	100.0
2023	6	6	100.0

3-4-2. 의료원 진료감액

우리 대학원은 다양한 학생복지시설을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결과	충족(P)
------	----	--------	-------

<표 3-4-2-1> 의료원 진료 감액 비율 제공 현황

순위	구분	감액율(%)		비고
		본인	직계	
1	본 대학 재학생과 배우자	30	10	
2	본 대학 졸업생과 배우자	10	10	

● 평가결과 분석

- 대학원 기숙사 수용률의 경우,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전원 기숙사 배정을 통해 100%의 수용률을 나타냄.
- 우리 대학의 의료원 이용 시 진료 감액 비율을 적용하여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3-5. 대학원생 권리장전

우리 대학원은 학내외 증가하는 대학원생 인권 문제를 의식하고 대학원생들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3-5-1. 대학원생 권리장정 제정 및 시행

우리 대학원은 학내외 증가하는 대학원생 인권 문제로 어려움이 있거나 부당한 처우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로 대학원생 권리장정을 제정하여 학생, 교직원 모두 대학원생들의 자유로운 연구활동과 존엄을 보장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정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4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 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5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6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7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제8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과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제13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권리장전을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평가결과 분석

- 대학원생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시행하고 있음.
- 권리장전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원생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보장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복리후생권 보장 ▲의사결정 참여 보장 ▲학업·연구권 보장 ▲연구 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보장 ▲지적재산권 보장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보장 ▲지도교수 변경권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부분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원생 인권 침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

4. 연구

4-1. 대학원생 연구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1-1.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행정적, 재정적, 물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결과	충족(P)
------	----	--------	-------

-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논문, 연구과제, 연구 성과들의 DB를 구축하고, 대학원생들이 DB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자격을 제한하였음. 석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부교수 이상으로 하는 등 자격의 제한을 두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본 대학의 자문화장품, MRC 등 대학 자체 내 산업기반 및 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연구 기반의 산업체나 연구소에 진출해 있는 본교 출신 대학원생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논문 관련 조항 제42조인 ‘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학위논문 질 강화 방안으로 박사학위논문 제출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한 검토 및 정립이 필요함. 학과별 수준을 고려한 자체 내규 제정이 필요하지만,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은 최소한 박사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학회발표 1회 이상인 자 또는 전국규모학술지, 지방학술지, 대학교내연구소지 등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자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 전용 연구 공간을 확충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필요함.

● 평가결과 분석

- 우리 대학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질 강화 방안으로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 및 정립으로 연구의 질을 높이고 있음.

4-2. 연구윤리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2-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시행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여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준수를 검증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결과	충족(P)
------	----	--------	-------

- 대학원 학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학문적 진실성과 수준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학원 내규인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을 2015년 10월 29일에 제정·공포하여 시행하였음.
- 연구윤리 준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이를 준수하였을 경우에만 학위를 수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학위 수여 취소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논문 제출 시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음.
- 논문의 정확성을 위한 국제적 지침(CONSORT,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을 확대 실시하고, 논문 작성 시 진단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무작위 임상시험 지침(STARD, Standards of Diagnostic Accuracy)을 적용이 필요함.
-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학문적 진실성과 수준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강 및 워크샵 등이 필요함.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한의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 학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문적 진실성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생의 학위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생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학위논문이 장기적으로 인류사회에 영향을 미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제 4 조(연구윤리준수) 학위논문을 청구하는 자는 학문의 기초와 창의적 연구를 통해 학문적 진실에 입각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5 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필”이라 함은 논문의 제목, 목차설정, 논문내용, 자료의 분석 및 정리 등 논문 대부분을 타인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6 조(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준수확인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학위논문 진실성 검증) ① 학위논문의 부정행위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보건복지대학원장을 포함한 대학원위원회 위원 3인과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 등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대학원장이 된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검증조치) ① 대학원장은 제7조 제3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에 근거하여 학위논문 작성자 및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 사항을 결정한다.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학위논문 부정행위자등의 징계처분) ①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자가 재학생인 경우 대학원학칙에 따라 징계하고,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박탈한다.

② 학위논문 부정행위자의 지도교수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3년 이하 지도교수 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이미 논문 지도를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자격은 예외로 인정 한다.

③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자가 학위를 받은 자인 경우 대학원 학칙에 따라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10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평가결과 분석

- 우리 대학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대학원 학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문적 진실성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학위논문의 연구윤리 제도를 정립하여 준수하고 있음.

4-2-2. 「산학협력단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시행

우리 대학원은 산학협력단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시행하여 학문적 진실성과 수준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 학내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시행을 위한 제도를 구축함.
-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전 교직원, 대학원생 및 학부생을 대상으로 대학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

산학협력단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한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

다. <개정 2017. 12. 29.>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7. 12. 29.>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연구개발 활동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추가 2023.05.12.>
 9.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추가 2023.05.12.>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추가 2023.05.12.>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추가 2023.05.12.>
-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서 알린 자를 말한다.
-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⑦“연구 관리부서”라 함은 교내·외연구비를 관리하는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팀을 말한다. <개정 2012. 05. 01><개정 2017. 12. 29.><개정 2023.05.12.>

제5조(검증시효) 연구윤리 제보 및 검증의 대상은 피조사자가 과거 행한 모든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교육)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7. 12. 29.>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기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수행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 중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개정 2017. 12.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6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필요시 비상설로 운영한다.

- ②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05.12.>
- ③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연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5.12.>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운영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검증 절차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개정 2023.05.12.>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개정 2017. 12. 29.>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7. 12. 29.>

③ 예비조사는 연구 관리부서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예비조사의 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 조사는 총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위원회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2. 29.>

②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3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총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한다. <개정 2017. 12. 29.>

제18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 결과 <개정 2017. 12. 29.>
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4.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개정 2017. 12. 29.>
6.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7. 조사위원 명단

제19조(판정) ①조사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이의 절차는 본 조사 절차에 준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1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 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관련자가 본교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소속 기관장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3.05.12.>

②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평가결과 분석

- 우리 대학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연구윤리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규정하여 본 대학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적용하여 있음.

4-2-3. 「연구윤리과목」 개설 및 수강

우리 대학원은 연구윤리과목을 개설 및 수강으로 대학원생의 연구윤리 의식을 강화시켜 학문적 진실성과 수준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대학원생의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과목”을 석사 및 박사과정

에 공통과목으로 개설 및 운영하고 있음.

- 적용 대상자 : 2016년 석사학위, 박사학위,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모두(본인이 무논문으로 졸업예정이라도 모두 수강해야 함, 계약학과 학생도 모두 대상임)
- 개설내용: 모든 학위과정 대학원생 "연구윤리" 공통필수과목(P/F), 학위수여 자격요건에 추가
- 운영방식 : 재학 중 연구윤리 정규 강의 수강을 원칙(2학기 개설)으로 하고 있으며, 강의는 총 1~8주 연구윤리1, 9~14주 연구윤리2로 구성되어 있다. 전 학생은 졸업요건 이수를 위해 각각의 강의를 이수하여야함.

< 대학원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규정 참조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41조(학위수여 자격요건) ①석사학위 수여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학점이상 취득한 자(추가학점 학위논문대체신청자는 33학점 이상, 무논문학위청구자는 30학점 이상 취득)(변경 2021.06.24.)
2.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3.0(B등급)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청구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무논문학위청구자는 제외)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학위논문대체를 인정받은 자 (변경 2020.02.19.)(개정 2021.06.24.)
5. (삭제, 2009.05.11.)
6. 소정의 연구지도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16. 7. 1.>

②박사학위 수여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6학점이상 취득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0학점이상 취득한 자) (개정2015.10.20.)
2.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3.0(B등급)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20.08.25.)
5. (삭제, 2009.05.11.)
6. 소정의 연구지도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신설 2016. 7.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윤리교육에 따른 경과조치) 제41조(학위수여 자격조건) 중 연구윤리교육 이수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2조의2(연구윤리교육) ①연구윤리교육은 2학기에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자는 수업연한 이내에 재 수강할 수 있다.<신설 2016. 7. 1.>

②수업연한 이내에 소정의 연구윤리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수료자 등록후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1.>

③연구윤리교육의 평가는 P(합격), F(불합격) 2등급으로 평가한다.<신설 2016. 7. 1.>

제4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4회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또는 학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조기에 이수한 자.(개정 2017.04.24.)
2. 소정의 연구지도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개정 2016. 7. 1.)
3.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B등급)이상인 자
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논문심사 및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변경08. 1. 2)

②제①항 5호와 관련하여 학위논문 대체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 및 계약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심사 및 구두시험을 학위청구논문 대체 요건 충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학과 해당 학생은 2학기 초 학위청구논문 대체 희망원을 제출하고, 3학기 초까지 학위청구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대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각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02.19)(2021.06.24.)

③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항 변경 2020. 02. 19)

1. 36학점(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이상을 취득하고, 4회이상(석·박사통합과정 6회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또는 학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조기에 이수한 자(변경 2012.10. 4.)(개정 2015.10.20.)
2. 소정의 연구지도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개정 2016. 7. 1.)
3.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B등급)이상인 자
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논문심사 및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변경08. 1. 2)

④제1항 및 제2항 외의 세부기준은 학과(전공) 내규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08.8.26)(항 변경 2020. 02. 19)

● 평가결과 분석

- 우리 대학원은 제도적으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실시함으로써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있음.

4-3. 논문표절검정시스템

우리 대학원은 학술정보원에서 논문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3-1. 논문표절검정시스템 관리 및 적용

우리 대학원은 학위논문의 논문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위논문 제출 여부 및 연구윤리 확보하여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객관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는 대학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교직원과 대학원생에게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함.
- 2015학년도 2학기부터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대상자에 대해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결과로서의 '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출력하여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논문지도를 받도록 함.
 - 논문 완성본 제출 시 표절검사결과확인서의 표지 확인란에 지도교수가 확인·날인하여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객관적·효율적으로 관리함.
-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의 웹 기반 프로그램 제작하여 본 대 학원의 학생들이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
- 연구 부정행위 없는 건전한 학술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하였음.
 -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을 대학원생들에게 공지 및 안내하였음.



<그림 4-3-1-1> 대구한의대학교 논문표절검사프로그램

4-4. 장학금

우리 대학원은 교내외 장학금을 제공하여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에 경제적인 도움과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며 학문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4-4-1. 교내외 장학금

우리 대학 대학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장학금 총액과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표 4-4-1-1> 연도별 장학금 지급을 현황

(금액 단위 : 원)

공시년도	재학생수 (A)	교외장학금 (B)	교내장학금 (C)	합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D/A)
2022	230	4,500,000	761,899,700	766,399,700	3,332,172.6
2023	-	0	778,117,900	778,117,900	-

● 평가결과 분석

- 매년 총 장학금액이 감소하였으며, 1인당 장학금액도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특히 교외 장학금의 연도별 편차가 커 이에 대한 분석과 지속적인 교외 장학금 유치전략 수립이 필요함.

5. 시설·설비

5-1. 교육시설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학습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대학원생의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5-1-1. 대학원 학과별 시설

대학원 학과별 강의실, 실험실, 세미나실을 통해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수업 및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원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결과	충족
------	----	--------	----

<표 5-1-1-1> 대학원 학과별 시설 현황

호실	호실명	소속학과명	용도구분	전용면적 (㎡)
11-0103-1	건축디자인학부학생회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학생회관	36
18-0106-0	8-106 실내건축학생회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학생회관	30.63
18-0301-0	8-301 제도실 2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36
18-0404-0	8-404 강의실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강의실	70.2
18-0405-0	8-405 강의실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강의실	70.2
18-0406-0	8-406 실내건축학설계실1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2.65
18-0406-1	8-406-1 실내건축학설계실2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2.65
18-0407-0	8-407 실내건축학설계실3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2.65
18-0407-1	8-407-1 실내건축학설계실4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2.65
18-0503-0	8-503 조형론및실습실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12
18-0504-0	8-504 건축설계실 2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강의실	70.2
18-0505-0	8-505 시청각실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강의실	70.2
18-0506-0	8-506 건축설계실1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2.65
18-0507-0	8-507 출력실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2.65
18-0507-1	8-507-1건축설계실2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2.65
18-0507-2	8-507-2 강의실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강의실	52.65
18-0306-0	8-306 CAD실습실2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05.3
18-0307-0	8-307 CAD실습실1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77.22
18-0401-0	8-401 제도실 1	건축·소방방재환경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36
15-0501-0	5-501 노인케어실습실	복지관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87.75
15-0505-0	5-505 노인복지 실습실	복지관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87.75
16-0B10-7	6-B110-7 물리치료학과학생회	의과학과	학생회관	17.28
28-0502-0	11-502 기초의학실습실	의과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84.24
28-0504-0	11-504 진단평가학실습실	의과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84.24
28-0505-0	11-505 임상운동학실습실	의과학과	강의실	84.24
28-0505-1	11-505-1(통합)	의과학과		
28-0506-0	11-506 임상물리치료실습실	의과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84.24
28-0508-0	11-508 운동치료학실습실	의과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12.32
28-0512-0	11-512 통증치료학실습실	의과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84.24
41-0203-0	화장품소재공학학과사무실	화장품약리학과	행정시설	27
41-0204-0	41-204 세포배양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7
41-0205-0	41-205 화장품제제연구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75.6
41-0211-0	41-211 학생세미나실	화장품약리학과	강의실	90
41-0212-0	41-212 공동실험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26
41-0213-0	41-213 화장품소재연구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75.6
41-0216-0	41-216 약리학연구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11.6
41-0301-0	41-301 특성화인재양성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4

41-0301-1	특성화인재양성(부속)실	화장품약리학과	행정시설	19.2
41-0302-0	41-302 강의실	화장품약리학과	강의실	108
41-0303-0	41-303 강의실	화장품약리학과	강의실	54
41-0304-0	41-304 독서실	화장품약리학과	학생회관	54
41-0305-1	41-305-1실험준비실(부속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4.4
41-0307-0	41-307 학과사무실	화장품약리학과	행정시설	36
41-0309-0	41-309 천연소재분석실험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26
41-0310-0	41-310 세포배양실(암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8.8
42-0103-0	42-103 화장품제형개발연구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07
42-0104-0	42-104 103호 실험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42-0105-0	41-105 103호 실험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42-0112-0	별관-112 세미나실	화장품약리학과	강의실	54
42-0113-0	42-113 실험준비실(예비)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40.5
42-0114-0	42-114 실험준비실(예비)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36
42-0115-0	42-115 창의융합행정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31.5
42-0116-0	42-116 창의융합실험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53
42-0201-0	42-201 강의실	화장품약리학과	강의실	108
42-0202-0	42-202 강의실	화장품약리학과	강의실	108
42-0203-1	탈의실샤워실(남)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2.5
42-0203-2	탈의실샤워실(여)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2.5
42-0204-0	준비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36
42-0205-0	205 피부면역약리실험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72
42-0206-0	206 피부면역약리실험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36
42-0209-0	준비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36
42-0210-0	210 화장품생화학실험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08
42-0211-0	211 화장품생리활성실험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72
42-0212-0	212 기초화장품실험실습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99
42-0214-0	암실(24m2)	화장품약리학과		
42-0214-1	214 화장품미생물실험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4
42-0215-0	현미경실(24m2)	화장품약리학과		
42-0215-1	215-1 피부세포실험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4
42-0216-0	216 색조화장품실험실습실	화장품약리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53
17-0205-0	7-205 강의실	보건학과	강의실	67.5
17-0302-0	7-302 산업보건분석실	보건학과	연구용실험실	67.5
17-0302-1	산업위생준비실	보건학과	연구용실험실	33.75
17-0304-0	7-304 산업보건실습실	보건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48.75
17-0304-1	산업보건실습 기계실	보건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8.75
17-0401-0	7-401 보건관리준비실	보건학과	행정시설	33.75
17-0402-0	7-402 산업안전실습실	보건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01.25

17-0403-0	7-403 강의실	보건학과	강의실	67.5
17-0404-0	7-404 강의실	보건학과	강의실	67.5
17-0405-0	7-405 보건관리실습실	보건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84.38
15-0502-0	5-502 아동복지학과실습실	장애아동보육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17
15-0503-0	5-503 강의실	장애아동보육학과	강의실	117
28-0204-0	11-204 국가지정향장소재은행	제약공학과	연구용실험실	112.32
28-0702-0	11-702 제약공학실습실	제약공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84.24
28-0703-0	11-703 대학원세미나실	제약공학과	강의실	30.42
28-0703-1	11-703-1 그룹학습실	제약공학과	강의실	25.37
28-0704-0	11-704 강의실	제약공학과	강의실	84.24
28-0705-0	11-705 강의실	제약공학과	강의실	56.16
28-0706-0	11-706 강의실	제약공학과	강의실	112.32
28-0706-1	11-706-1 (통합)	제약공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8-0708-0	11-708 제약공학과실험실	제약공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84.24
28-0708-1	11-708-1 (통합)	제약공학과	강의실	
28-0711-0	11-711 바이오나노컨버저스실습실	제약공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6.16
28-0814-0	11-814 제약공학실험준비실	제약공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8.08
17-0201-0	7-201 청소년교육상담실습실	청소년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01.25
17-0203-0	7-203 강의실	청소년학과	강의실	67.5
17-0303-0	7-303 수업행동분석실	청소년학과	강의실	67.5
19-0609-0	9-609청소년문제연구소	청소년학과	연구시설	30.2
41-0501-0	41-501 한식조리실습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08
41-0501-1	41-501-1 한식메뉴개발실험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9.2
41-0502-0	41-502 양식조리실습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86.4
41-0504-0	41-504 한식세계화메뉴개발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32.4
41-0505-0	41-505 강의실(대학원)	한방식품학과	강의실	32.4
41-0506-0	41-506 식품효능분석연구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93.6
41-0506-1	41-506-1 기기분석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32.4
41-0506-2	41-506-2 식품효능분석준비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32.4
41-0508-0	41-508 영양판정 및 상담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36
41-0509-0	41-509 임상영양연구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08
41-0509-1	41-509-1 사육준비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9.2
41-0509-2	41-509-2 폐기물보관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41-0509-3	41-509-3 사육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41-0510-0	41-510 미생물실험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20
41-0515-0	41-515 학부사무실	한방식품학과	행정시설	36
41-0516-0	41-516 강의실	한방식품학과	강의실	64.8
41-0517-0	41-517 강의실	한방식품학과	강의실	48.6
41-0518-0	41-518 급식외식실험실습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90

41-0519-0	41-519 급식외식평가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32.4
41-0522-0	41-522 약선매뉴개발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32.4
41-0523-0	41-523 파티플래너식음료실습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97.2
41-0524-0	41-524 약선조리발효식품실습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86.4
41-0524-1	41-524-1 발효식품연구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9.2
41-0525-0	탈의실	한방식품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9.2
12-0401-0	2-401 해부학실험실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32.4
12-0401-1	2-401-1 해부학준비실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0.52
12-0402-0	2-402 해부학실습실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92.25
36-0101-0	12-101호 관리실,복사실	한의학과	학생회관	33.74
36-0301-0	12-301 자유열람실	한의학과	도서관	129.68
36-0302-0	12-302 자유열람실	한의학과	도서관	148.97
36-0311-0	12-311 한의과대학비품실	한의학과	강의실	32.42
36-0312-0	12-312 멀티미디어실(한의)	한의학과	행정시설	64.84
36-0313-0	12-313 세미나실	한의학과	학생회관	32.42
36-0401-0	12-401 분반강의실	한의학과	강의실	129.68
36-0402-0	12-402 스터디룸(한의)	한의학과	학생회관	32.42
36-0403-0	12-403 스터디룸(한의)	한의학과	학생회관	32.42
36-0404-0	12-404 학생휴게실(한의)	한의학과	학생회관	32.42
36-0406-0	12-406 MRC-GHF 강의실	한의학과	강의실	91.18
36-0407-0	12-407 기초한의학실습실1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94.52
36-0408-0	12-408 기초한의학실습실2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94.52
36-0409-0	12-409 병리진단학실험실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64.84
36-0410-0	12-410 MRC-GHF 회의실	한의학과	연구용실험실	32.42
36-0411-0	12-411 MRC-GHF 연구실3	한의학과	연구용실험실	30.23
36-0412-0	12-412 본1강의실	한의학과	강의실	
36-0413-0	12-413 본2강의실	한의학과	강의실	
36-0414-0	12-414 스터디룸(한의)	한의학과	학생회관	30.23
36-0415-0	12-415 스터디룸	한의학과	학생회관	32.42
36-0502-0	12-502 MRC-GHF 연구실1	한의학과	연구용실험실	32.42
36-0503-0	12-503 MRC-GHF 연구실2	한의학과	연구용실험실	32.42
36-0507-0	12-507 강사대기실	한의학과	강의실	32.42
36-0508-0	12-508 한의과학장실	한의학과	행정시설	51.71
36-0509-0	12-509호 MRC-GHF 공동실험실1	한의학과	연구용실험실	91.18
36-0510-0	12-510 기초한의학실습실3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94.52
36-0511-0	12-511호 MRC-GHF 공동실험실2	한의학과	연구용실험실	97.26
36-0512-0	12-512 MRC-GHF 공동실험실3	한의학과	연구용실험실	32.42
36-0513-0	12-513 MRC-GHF 공동실험실4	한의학과	연구용실험실	64.84
36-0514-1	12-514-1MRC-GHF 연구실4	한의학과	연구용실험실	32.42

36-0514-2	12-515 MRC-GHF 공동실험실5	한의학과	연구용실험실	32.42
36-0516-0	12-516 계단강의실	한의학과	강의실	228.58
36-0517-0	12-517 계단강의실	한의학과	강의실	228.58
36-0518-0	12-518 의사문헌실	한의학과	행정시설	43.92
36-0601-0	12-601 MRC-GHF 연구실5(50M2)	한의학과	연구용실험실	
51-0300-1	별관-300-1ALLPASS동아리	한의학과	계열별부속시설	17.76
51-0300-2	별관-300-2 본2자율학습실	한의학과	계열별부속시설	17.76
51-0301-1	별관-301-1 자율학습실4	한의학과	계열별부속시설	28.98
51-0301-2	별관-301-2 자율학습실3	한의학과	계열별부속시설	22.55
51-0301-3	별관-301-3 자율학습실2	한의학과	계열별부속시설	24.84
51-0301-4	별관-301-4 자율학습실1	한의학과	계열별부속시설	24.84
51-0B10-3	별관-B103 탁구장 1	한의학과	계열별부속시설	92.74
51-0B10-4	별관-B104 탁구장2	한의학과	계열별부속시설	98.83
51-0B10-6	별관-B106 체력단련실3	한의학과	계열별부속시설	31.05
57-0101-0	한의-101강의실(본1)	한의학과	강의실	181.44
57-0104-0	한의-부학장실.강사대기실	한의학과	행정시설	16.32
57-0106-0	한의-106 강의실(본2)	한의학과	강의실	194.4
57-0201-0	한의-201강의실(본4)	한의학과	강의실	185.09
57-0202-0	한의-202공실(한의물품보관중)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4.68
57-0203-0	한의-203 임상술기실습실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86.65
57-0299-4	한의-2층 휴게실	한의학과	교육기본시설	36.72
57-0301-0	한의-301 강의실(본3)	한의학과	강의실	185.09
57-0302-0	한의-302 공실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4.68
57-0303-0	한의-303호 PBL실험토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0.94
57-0303-1	한의-303호 PBL실1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8.32
57-0303-2	한의-303호 PBL실2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6.85
57-0303-3	한의-303호 PBL실3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6.85
57-0303-4	한의-303호 PBL실4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6.85
57-0303-5	한의-303호 PBL실5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6.85
57-0399-4	한의-3층 휴게실	한의학과	교육기본시설	
57-0401-0	한의-401경혈기공학실습실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78.61
57-0402-0	한의-402 교원창업(김희영)	한의학과	기타시설	54.68
57-0403-0	한의-403호 PBL실 통로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0.94
57-0403-1	한의-403호 PBL실1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8.32
57-0403-2	한의-403호 PBL실2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6.85
57-0403-3	한의-403호 PBL실3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6.85
57-0403-4	한의-403호 PBL실4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6.85
57-0403-5	한의-403호 PBL실5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6.85
57-0499-4	한의-4층 휴게실	한의학과	교육기본시설	36.72

57-0501-0	한의-501제2자유연람실(국시)	한의학과	도서관	185.09
57-0502-0	생리경혈기공실험실(이상남)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54.68
57-0503-0	방제과학글로벌연구센터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02
57-0503-2	한의-503-2노성수연구실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2.82
57-0503-4	한의-503호 통로	한의학과	교수연구실	16.2
57-0504-0	한의-504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한의학과	연구용실험실	105.12
57-0505-0	한의-505기초한의학실습실	한의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25.2
57-0506-0	한의-506 동물실험실	한의학과	연구용실험실	25.2
57-0507-0	한의-507동물행동실험실	한의학과	연구용실험실	74.86
57-0507-1	한의-507-1동물실험실	한의학과	연구용실험실	34.56
57-0601-0	한의-605 병원참고열람실	한의학과	도서관	142.56
57-0602-0	한의-602 목록실	한의학과	도서관	97.2
57-0603-0	한의-603 대출자료실	한의학과	도서관	189.72
57-0604-0	한의-604 병원자유열람실	한의학과	도서관	280.8
57-0B10-0	한의-B101 강당	한의학과	강의실	342.3
57-0B10-3	한의-B103 멀티미디어실	한의학과	학생회관	44.37
57-0B10-4	한의-B104 휴게공간	한의학과	학생회관	
61-0101-0	간호-101 대학원강의실	한의학과	강의실	116.39
61-0102-4	간호-201 대학원세미나실4	한의학과	강의실	27.93
18-0201-0	8-201 도시환경디자인실습실1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36
18-0202-0	8-202 도시환경디자인실습실2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70.2
18-0302-0	8-302 도시환경디자인실습실4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70.2
41-0402-0	41-402 한약개발학 Lab I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62
41-0403-0	41-403 한방유전자원 실험실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26
41-0403-1	41-403-1 항온실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4.4
41-0404-0	41-404 천연물분석 실험실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72
41-0404-1	Cleen Room(세포실험실)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4.4
41-0405-0	41-405 한약개발학 학과사무실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행정시설	36
41-0406-0	41-406 약용식물생태학 실험실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72
41-0408-0	41-408 한약제조 실습실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42
41-0410-0	41-410 생리학실습실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72
41-0412-0	41-412 한약자원개발 실험실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72
41-0414-0	41-414 한약개발학 Lab II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일반수업용 실험실	113.4

41-0416-0	41-416 한약개발학강의실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강의실	108
41-0417-0	41-417 한약개발학 강의실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강의실	108
41-0419-0	41-419 휴게실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학생회관	19.2
41-0B12-0	한약개발학 학생회실	한약개발학과 /(계약)산림비즈니스학과	학생회관	45
28-0106-0	11-106 강의실2(대학원)	대학원	강의실	58.32
28-0803-0	11-803 강의실1(대학원)	대학원	강의실	84.24
28-0810-1	11-810-1대학원세미나실2	대학원	강의실	56.16
28-0813-0	11-813 대학원휴게실	대학원	학생회관	28.08
28-0816-0	11-816 대학원세미나실1	대학원	강의실	60.84

● 평가결과 분석

- 대학원 자체 강의실, 실험실, 세미나실을 통해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수업 및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원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대학원 학과별로도 대학원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업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IV. 종합 및 논의

1. 발전계획 및 특성화

● 강점

-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운영체계에 따라 지속적인 실천을 하고 있음.
- 대학원 발전계획의 추진에 있어 전체 대학원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확보되어 있으며, 학과 및 행정부처의 대학원 구성원은 대학원발전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대학원 발전계획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발전계획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도별 평가를 통해 대학원 발전 및 교육개선에 반영함.

- 대학원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자체평가를 2년 주기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원 주요지표가 전반의 향상됨.
-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와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대학 구조개혁 및 특성화를 주도하기 위한 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변화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설문조사를 통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함께 참여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교육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교육목표 및 인재상의 실현을 위해 대학원 발전계획을 지표화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음.

● 개선점

- 대학원 발전계획의 영역별 주요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학위목표와 전략부분에서 전공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과 및 전공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
- 각 전공별 특성화를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발전방향

- 구체적인 전공별 특성화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여야 함.
- 국내외 교육환경의 변화는 대학의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학원 발전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발전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해 대학원 자체의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가치창출이 추진되어야 함.
- 대학원 자체평가는 대학원운영 전반의 지속적, 실질적 지표관리 및 점검을 위해 대학원 발전계획의 영역별 평가시스템과 연계한 방안이 필요함.
- 사회적 요구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원 발전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내부역량의 점검과 단계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원 주요 학과의 설립목적과 다양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대학원 발전 및 특성화가 추진되어야 함.

2. 교육

● 강점

- 학칙 및 체계적인 교과과정운영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과정은 대학의 인재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충실히 운영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음.

- 교육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 전반에 반영하고 있음.
- 정기적으로 교육과정 개편 학과별 의견수렴으로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음.

● 개선점

- 전자출결 등 수업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 교육과정의 개편에 대한 명시 및 교육과정 개편시 학생 수요 조사, 관련 산업계 요구, 학문분야 동향 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할 필요성 제기
- 학석사연계과정 도입을 통한 학부와 대학원 교육의 연결 및 지속성을 만들었음

● 발전방향

- 한의학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비한 의사들의 학습 욕구를 한의학 교과과정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사회와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원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3. 학생

● 강점

-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학생 유치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 및 충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그 결과 6년 연속 정원외 포함 100% 이상의 높은 신입생 충원율을 보임.
- 석사학위논문대체제도 도입을 통한 학위 취득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음
- 질 높은 교육과 관리를 통한 전국 및 대구경북권의 타 대학 대학원에 대비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이 전국 타 대학의 평균 상회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기숙사 신청 대비 100% 입소, 의료원 이용료 감액 등 학교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복지 지원
- 대학원생 권리대장전이 마련되어 모든 대학원내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인식하고, 인권과 권리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대학원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 대학원생의 학문 증진 등에 이바지하고 있음.

● 개선점

- 향후 학령인구의 감소, 수도권 대학원으로의 진학 및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른 우리 대학원 진학 희망 학생수 감소를 대비한 입시전략이 필요함.

- 학생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불만을 파악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으로 교육 및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한의학석사·박사 과정의 비한 의사 중 외국어 능력이 저조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함.
-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연구 인력으로 수용하고자 하여도 입학 자격조건에서 한국어 능력 3급이라는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제교류팀과 논의 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발전방향

- 학생복지 분야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학생복지시설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전문 인력 확보 및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함.

4. 연구

● 강점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윤리 오프라인 수업의 엄격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의무적 수강을
- 본 대학의 확장품, MRC 등 대학 자체 내 산업기반 및 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개선점

- 대학원생들 연구 지원 등을 위한 연구장려장학금의 지원을 통해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함.
-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외부 연구비 수주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교수들에게 집중되어 있음. 연구하지 않는 교수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각종 인사 고과 관련 평가에서 연구와 관련된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 우수 대학들에 비해 매우 낮으며, 연구에 매진하는 교수들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거나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
- 대학원 전용 연구공간을 확충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필요함.
- 논문의 정확성을 위한 국제적 지침을 확대 실시하고, 논문 작성 시 진단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무작위 임상시험 지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발전방향

-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체제구축이 필요함. 또한 우수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문적 진실성과 수준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강 및 워크숍 등이 필요함. 즉, 논문 작성법, 우수 논문에 대한 분석, 연구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및 실천이 필요함.

5. 시설·설비

◎ 강점

- 대학원생을 위한 강의실, 연구실이 확보되어 있으며 편의를 위한 기타 시설을 통해 원활하고 쾌적한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음

◎ 개선점

- 수성캠퍼스, 오성캠퍼스 대학원 강의실 환경 개선 필요
- 대학원 세미나실과 대학원 휴게실이 특정 건물(11호관)에 배치되어 있어 대학원 재학생이 많은 다른 건물에 대학원 공용 세미나실 추가 필요

◎ 발전방향

- 대학생 편의를 위한 별도의 시설 추가 확보 및 전용 강의실 배정을 통해 대학원생의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교내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야 함.
-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재학생의 만족도 확인을 통해 지속적인 시설 및 설비 관리 및 보완이 필요함.

작성 : 성길제(인)

확인 : 성미향(인)